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16.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이진환 의원 등 6명

○ 발의일자: 2025. 7. 4.(금)

○ 회부일자: 2025. 7. 4.(금)

○ 상정 및 의결: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5. 7. 16.)

2.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및 절차(안 제3조)

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등(안 제4조)

마.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안 제5조)

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5. 7. 4. ~ 2025. 7. 14.)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이 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일부의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한 경우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마련,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 간접 흡연 피해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상기 제정조례안은 주민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우리구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2025. 6. 30. 기준)

(단위:건)

합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8	5	3	2	3	3	6	3	3

※ 우리구 주택 현황(2024. 12. 31. 기준)

(단위:호)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254,431	85,956	6,464	936	159,632	1,443
100.0%	33.8%	2.5%	0.4%	62.7%	0.6%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